

정기(기동점검) 점검 결과보고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공사〕

□ 점검일시 : 2018.05.03 (목)

□ 점검결과

◆ 점검자 : 정진혁, 박상종

○ 중량물취급 안전(토목부)

-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설치 작업 구간에서 사용중인 파손된 슬링벨트는 양중작업 시 낙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고 양호한 슬링벨트로 교체하여 작업하기 바람.

※ 건설안전 기본지침(개정) 공통-031(벨트 슬링)



○ 사면 안전(토목부)

- 교대2(A2)의 흙막이가시설 배면의 배수로는 토사가 흘러 내려오지 않도록 청탑지로 보양해 놓은 상태이나 배수로 말단부에서 도로로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우수가 채수될 공사장내로 월류할 수 있으므로 종구 배수대책 강구요망

- 또한 근로자 작업통로 인근 유용토를 쌓아 놓은 성토 사면 하부에 토사측구를 개설해 놓았으나 현재는 밀려드러온 토사로 인해 배수기능이 없는 상태이므로 안전한 사면 관리를 위해 측구 수로를 보수하고 수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관리요망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사면 안전(토목부)

- 오류IC 기존교대철거 구간 우수에 의한 사면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보호덮개(청탐지)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 바람에 날리니 견고하게 고정하고,
 - 일부 사면이 노출된 부분은 침식 방지를 위하여 보호덮개(청탐지)를 보완하기 바람.
-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건설기계 안전(토목부)

-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설치 작업 구간에서 작업중인 굴삭기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기 바람.
- ① 버킷에 이탈방지 안전핀을 설치하고 작업하기 바람.
 - ② 작업반경내 근로자 접근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접근금지봉은 근로자 협착 방지를 위하여 후방을 향하여 적정높이에 부착하기 바람.



③ 경계석 이동 등 양중작업 시 사용되는 혹은
 훅해지 장치를 부착하고 작업하기 바람.
 ※ 건설안전 기본지침(개정) 공통-029(건설기계
)
 ※ 건설안전 기본지침(개정) 공통-032(굴삭기)



○ 감전재해 예방(토목부)

-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설치 작업 구간에서 하
 수맨홀 설치를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드릴은 접
 지극이 없는 플러그가 사용되고 있으니, 근로자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접지형 플러그가 부착
 된 드릴로 교체하여 작업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
 기 기계 기구의 접지)
 ※ 건설안전 기본지침(개정) 공통-018(기계기구
 접지)



○ 감전재해 예방(토목부)

-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설치 작업 구간에서 하
 수맨홀 설치를 위하여 사용 중인 릴선이 차량이
 다니는 바닥에 방치되어 사용중으로 피복이 훼손
 될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동식
 전선 보호대책 강구요망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통
 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 화재/폭발/질식 재해 예방(토목부)

- 오류IC 기존교대철거 구간에 근로자 흡연을 위
 하여 설치해 놓은 흡연구역은 흡연으로 인한 화
 재 예방을 위하여 소화기를 비치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화
 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 화재/폭발/질식 재해 예방(토목부)

- 교대1(A1) 작업장에 사용중인 소분전반은 주로 용접작업용으로 누전차단기를 30A를 사용하고 콘센트를 16A를 사용하여 16A~30A의 전기 용접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누전차단기가 떨어지지 않아 콘센트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전차단기를 20A로 교체하거나 콘센트를 30A로 교체요망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 위험공중 사전작업 허가제(토목부)

- 철거예정인 기존 교대는 2m이상 콘크리트 철거작업으로 위험공중 사전작업 허가제 사항이므로 실제 시공계획에 따른 안전조치와 관련된 허가서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득하고 승인 내용을 관련 작업자들과 협의 후 작업요망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기타 안전관리(토목부)

- 오류IC 기존교대철거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분전반은 그 높이가 근로자가 사용하기 부적절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니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작업발판 등)

